

PS

제 227 호) 모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
 은도 시행할것을 명령한 망우, 좌양 (동부서울 1부) 창동, 익촌, 안의, 토지
 구획정리 사업 계획에 있어서 비용 부담방법 및 토지 처분 방법 기타 정리상
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 하기 사항은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
 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인도부터
 14일간 동 지구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종합에 공한다.

1.66. 1966. 12. 6

서울특별시시장 김 연 옥

기

- 1. 사업계획 법체 사업 계획서와 감음.
- 2. 비용부담방법 별도 부담금 징수 조례의 성하는바에 의함.
- 3. 토지처분 방법 및 기타 별도 망우, 좌양, 창동, 익촌, 안의토지구획정리
 구획정리상 필요한바 지구 지할 규칙의 정하는바에 의함.

4. 지구내 구역

- 가. 망우지구. 입목동, 상봉동, 중의동, 안의동 각 1부.
- 나. 좌양지구. 좌양동, 선수동 2각 각 1부. 양장동, 용영동, 모진동, 구의동, 자양동 각 1부
- 라. 창동지구. 수유동, 연동, 쌍문동, 창동, 피아동 각 1부.
- 리. 익촌지구. 익촌동, 구산동, 피조동, 선수동, 용암동, 녹전동 각 1부.
- 로. 안의지구. 안의동 1부.



본 지구내에 소재한 도시 (별첨 토지 율부 참조)에 대하여는 편지 예정지 지
 정 공고일 까지 본 사업 집행상 일체의 건축 허가 사무를 중지 하시기 바랍.

첨부. 공고문 및 토지 율부 각 1부.

수신처. 서대문구청. 성북구청. 동대문구청. 성동구청

198

PS

제 227 호) 토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
 은도 시행할것을 명령한 망우, 피양 (동부서울 1부) 창동, 역촌, 연희, 토지
 구획정리 사업 계획에 있어서 비용 부담방법 및 토지 처분 방법 기타 정리상
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 하기 사항은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
 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인보부터
 14일간 등 지구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총합에 공한다.

1.66. 1966. 12. 6

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

기

1. 사업계획 법제 사업 계획서외 감음.

2.

수신처 참조

주신	수신처 참조	참심	지	장
제목	망우, 피양, 창동, 역촌, 연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공고			
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계획 공고문 범지의 같이 공고 하였으니 규 정 및 관하등 사무소에 동 공고문을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주지 시키는 동시에 본 지구내에 소재한 토지 (범점 토지 일부 참조)에 대하여는 환지 예저지 지 정 공고일 까지 본 사업 진행상 일체의 건축 허가 사무를 중지 하시기 바람.				
첨부. 공고문 및 토지 일부 각 1부.				
수신처. 서대문구청. 성북구청, 동대문구청. 성동구청				198

土地區劃整理事業法

第32條 (地方自治團體等의 施行認可)

① 第6條第2項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社가 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장하는 바에 의하여 施行規程 및 事業計劃을 장한후 그 施行에 關하여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.

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規程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

第33條 (供覽)

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社가 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申請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장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書類의 寫本을 14日間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

② 施行地區 안의 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前項의 供覽期間 내에 當해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社에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

③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社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가 제출이 있을 때에는 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申請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

안사본

건설부

건국시지령 422.4 - 331 (72-9256)

1966. 8. 8

수신 서울특별시

제목 서울 도시계획 협의지구 및 망우지구 (동부서울) 토지구획정리
사업 시행 명령

서도구 422.4-1221 (66. 7. 8)로 신청한 서울 도시계획 협의지
구 및 망우지구 (동부서울)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도시계획법 제 28조
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
명령 한다.

1966. 8. 8

건설부장관

다 음

- 1. 사업경
 - 가. 서울도시계획 협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
 - 나. 서울 도시계획 망우지구 (동부서울) 토지구획
정리 사업
- 2. 시행청 서울특별시
- 3. 시행지구
 - 가. 연희지구 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
홍은동, 봉계동, 남가좌동 각 1부.
 - 나. 망우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, 중학동
연동동, 장농동, 탑십리동, 휘경동,
각 1부.

285

9-5 pp

201

본 공고문은 1주간의 개편서는 작업 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함다



287

9-6 P7

서울특별시

202

사본

성동구
농동, 중곡동, 군자동, 송정동, 회양동,
성수1,2동, 자양동, 구의동, 공장동, 모진동
각 1부.

4. 시행면적 가. 연혁지구 800,000평
 나. 망우지구 5,000,000 평
5. 준공기한 가. 연혁지구 1968. 12. 31
 나. 망우지구 1970. 12. 31. 끝.

건설부장관

사본

김 성 부

건축시지령 4224 - 831 (72 - 1256)

1966. 11. 24

수신 서울특별시청

제목 서울도시계획정동지구 및 역촌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

시보공 제201 - 2250 (66. 11. 5)호 김정환 서울 도시계획 정동지구 및 역촌지구 도시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명령함.

1966년 11월 24일

김 성 부 장 관

다 음

- 1. 사업명 서울 도시계획 정동지구 및 역촌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
- 2. 시행청 서울특별시
- 3. 시행지구 정동지구 서울특별시 정동구 창동 1부.
역촌지구 시매문구 역촌동 1부.
- 4. 시행면적
정동지구 560,000평
역촌지구 700,000평
- 5. 준공기간
정동지구 1970. 12. 31
역촌지구 1970. 12. 31
- 6. 기 타 근접 노선을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동람에 국한는 동시 이의 관계인에게 통지함것.

사본

건설부 공고 제 227 호

서울도시계획 상동지구 및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
다음 과 같이 하등의 경. 령. 연. 기. 이. 문. 공. 고. 한. 다.

1966년 11월 24일

건설부장관

다 음

1. 사 업 명 서울도시계획 상동지구 및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
2. 시행청 서울특별시
3. 시행지구 차동지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동 1부.
역촌지구 서대문구 역촌동 1부.
4. 지 면 면적 상동지구 560,000평
역촌지구 700,000평
5. 준공기한 상동지구 1970. 12. 31
역촌지구 1970. 12. 31
6. 기 타 관계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
에 공한다. 공.

9-9 222

205

202